

대법원 2006. 6. 2 선고 2006다3875 판결 [소유권말소등기]

재판경과

대법원 2006. 6. 2 선고 2006다3875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3 선고 2004나8648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. 10. 29 선고 2003가합905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○○○

피고, 피상고인 1. ○○○

2. ○○○

3. ○○○

4. ○○○

5. ○○○

6. ○○○

7. ○○○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3. 선고 2004나86489 판결

판결선고 2006. 6. 2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(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), 여기서 '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'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(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두9951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, 피고 ○○○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, 그 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실시된 '파주시 ○○○에서 그 아들 내외인 ○○○과 ○○○가 이 사건 소장 부분과 기일소환장 등을 피고 ○○○의 동거자로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소지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○○○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거주지가 아니었으며, 그 무렵 피고 ○○○는 가족들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간 상태에 있어 ○○○과 ○○○가 수령한 이 사건 소장 부분 등의 송달물이 피고 ○○○에게

전달되지 못하였고, 그 후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○○○로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는 사실과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그 항소기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추후보완 항소에 관한 법리오해,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다5015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○○○이 일제강점기에 ○○○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 그 장남인 ○○○과 장손인 피고 ○○○가 ○○○의 점유를 차례로 승계하여 이 사건 종전임야 또는 그 분할 후의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하여 왔는바, ○○○과 그 상속인들은 ○○○이 이 사건 종전임야를 매수한 이후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종전임야에 ○○○의 분묘가 설치된 1949. 1. 10.경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,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, 이 사건 종전임야는 1937년경부터 ○○○과 그를 차례로 상속한 ○○○ 및 피고 ○○○가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, 나아가 ○○○과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점유는 다른 마을 주민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종전임야의 사정명의인과 그 상속인들도 이러한 점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여 온 바 없는 점, ○○○이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무렵 경기도령(京畿道令)에 의하여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이 사건 종전임야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○○○이 이 사건 종전임야의 이용자로 조사·등재된 점, ○○○이 사망하고 6·25 전쟁으로 이 사건 종전임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○○○을 단독상속한 ○○○이 이 사건 종전임야와 ○○○ 명의로 사정된 20여 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29필지 토지를 그 소유 재산으로 파악하여 이에 관하여 ○○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일괄 경료한 점, 이 사건 종전임야 소재지 마을의 주민들도 이 사건 종전임야를 ○○○과 그 상속인들 집안의 임야로 인정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, 비록

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○○○의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, ○○○이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거나,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종전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, ○○○의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○○○이 적어도 1938. 1. 1.경부터 이 사건 종전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·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8. 1. 1.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○○○의 피상속인 ○○○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, 자주점유, 시효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,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2553 판결, 1997. 5. 30. 선고 97다234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판시사항 등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 이 부분 상고이유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